

법조윤리협회의 운영절차에 관한 연구*

김 영 철**

목 차

I. 서 론	3. 결과보고
II. 업무 개관	VI. 사건의 결정
1. 법조윤리협회의	1. 소위원회 심의
2. 수임사건 분석·처리절차 개관	2. 전원위원회 의결
III. 접 수	3. 징계개시신청
1. 대상 사건	4. 수사의뢰
2. 사건의 접수	5. 불문종결처리
IV. 기초심사	VII. 사건기록의 보존
1. 기초자료의 수집	1. 징계개시 신청한 사건기록의 보존
2. 정밀심사·분석 대상사건의 선정	2. 수사의뢰한 사건기록의 보존
V. 정밀심사·분석	3. 불문종결 처리한 사건기록의 보존
1. 사건의 배당	VIII. 결 론
2. 정밀 심사·분석 업무	

I. 서 론

법조윤리협회의 탄생은 변호사 자치권 확보에 따른 반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1995년 법률 제5055호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 징계권이 법무부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 이양되게 됨으로써 변호사 사회의 오랜 숙원이던 변호사 자치가 크게 확대되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

* 이 논문은 법조윤리협회의 연구용역 “법조윤리협회의 변호사수임사건 분석절차와 그 방법에 관한 연구”(2010. 12. 31)를 논문의 체제에 맞추어 대폭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로 하는 변호사는 때로는 국가권력과 정면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때 충돌하는 상대방인 검찰 혹은 법무부에서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게 되면 징계권의 남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권리보장의 사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즉 변호사 자치가 필연적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1982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변호사의 징계권이 법무부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로 이양되게 됨으로써 변호사단체는 크게 확대된 변호사자치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호사자치가 확대되어 변호사업무의 독립성이 상당할 정도로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전관예우와 사건브로커에 의한 사건 수임 등 법조 부조리 사건이 그치지 않게 되자, 국민들은 변호사단체의 자율정화의지에 의구심을 품고 변호사자치의 한 축인 변호사징계 업무를 변호사단체에 일괄 이양하여 일원화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문제 삼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법조비리를 막고 전관예우 시비에 대해 윤리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생겼다.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대안으로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기로 제안하였고,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조윤리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률안을 작성하였다.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1호로 변호사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조윤리협회의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변호사법 제88조) 같은 해 7월 27일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¹⁾ 이제 법조윤리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 출범 후 해마다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보고해 오는 수천 건의 사건수임에 관한 자료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하는 시스템 즉, 매뉴얼이 갖추어지지 않아

1) 한인섭/한상희/김재원/이상수/김희수/김인회/정한중, 법조윤리(박영사, 2010), 86-88쪽 참조.

접수된 사건에서 법조비리존재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분석하는 절차가 자리 잡지 못하고 각종 업무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 결과로 법조윤리협회의 운영성과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거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²⁾

출범초기인 현재 법조윤리협회의 상근직원은 5명에 불과하고, 기관장인 법조윤리협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법조윤리협회 위원이나, 수임사건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은 60여 명의 전문위원들이 모두 비상근으로서 법조윤리협회 고유의 업무를 심도 있게 처리하기가 힘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 될 수 있는 업무절차를 개발·정착시키고, 법조윤리협회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대국민신뢰를 확보하려는 특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하에서는 법조윤리협회 업무처리의 절차, 즉 법조윤리협회 업무의 매뉴얼화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법조윤리협회가 설치된 이래, 2007. 7. 17. ~2009. 12. 31.까지 법조윤리협회의 활동결과를 보면 판사·검사 등 공직에 근무하다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 중인 공직 퇴임 변호사와 수임 건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특정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임사건을 분석한 끝에 총 21명의 비위협의를 있는 변호사를 가려내어 이들 변호사를 관할검찰청에 수사의뢰하거나 대한변협에 징계신청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두고 법조윤리협회 입장에서는 무난한 성과로 자평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눈에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경향신문 2009년 9월 22일자는 “법조윤리협회 ‘있으나마나’, 1년간 징계 요구한 ‘비리 변호사’ 고작 16명, 법조 윤리를 위반한 변호사를 걸러내는 법조윤리협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국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법조윤리협회는 2007년 7월부터 한 해 동안 16명의 ‘비리 변호사’를 찾아내 수사의뢰나 징계 신청을 했으나 실제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으로써 법조윤리협회 활동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II. 업무 개관

1.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변호사법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전반에 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설치된 전국단위의 법조윤리 협의기구이다.³⁾

법조윤리협의회는 “1. 법조윤리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 등이다(변호사법 제89조 제1항).

법조윤리협의회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나,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⁴⁾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변호사법 제89조의2).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6 제1항, 제2항)

3) 박휴상, 법조윤리(도서출판 fides, 2010), 477쪽.

4) 2011. 12. 31. 현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은 권광중 변호사(위원장), 안영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신현호 변호사,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최태현 교수(한양대),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윤남근 교수(고려대) 등 판사 2명, 검사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4명(변호사 자격자 2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법조윤리협의회 내부자료), 법률의 취지를 잘 반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법 제89조 제2항에 규정된 업무(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화, 진술 및 설명 요청)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수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임자료검토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둔다(법조윤리위원회 규칙 제14조 제2항).⁵⁾

윤리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3인의 간사와 사무기구를 두며, 정부는 법조윤리협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89조의 3 제1항, 제4항).⁶⁾

2. 수임사건 분석·처리절차 개관

수임사건 처리절차를 압축하면, i) 접수⇒ii) 기초심사(기초자료수집→정밀심사·분석대상사건선정)⇒iii) 정밀심사·분석⇒iv) 사건의 결정(소위원회 심의→전원위원회 의결→사건의 종결)⇒v) 기록의 관리의 절차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퇴직일로부터 2년 미경과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및 그 처리결과가 기재된 수임자료와, 일정한 수 이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각 지방변호사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접수한다.

사무국직원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 및 검찰청 등에 사건처리 현황을 조회하고,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임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윤리협회에 보고하고, 윤리협회는 이 자료를 기초로 정밀 심사·분석 대상사건을 선정한다. 이 절차를 기초심사라고 한다.

정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을 수임자료검토특별위원장이 소속

5) 2011. 12. 31. 현재 법조윤리협회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은 60명이고, 전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6) 이에 따라 법조윤리협회의 운영예산은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 협회가 각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는 출연금으로 편성되며, 위 3기관은 각 소속직원 중 간사 각 1명, 사무국 상근 직원 각 1명씩을 파견하고 있다.

전문위원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변호사에 대한 사건 의뢰인·관계당사자 등에 대한 전화·방문 질의, 탐문, 관련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수임사건의 처리에 법조비리행위가 있었는가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절차를 사건의 정밀 심사·분석이라 한다.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소관 소위원회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후 전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전원위원회는 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징계개시신청’, ‘불문종결’ 등으로 사건처리에 관하여 의결한다. 이 절차가 사건의 의결절차이다. 법조윤리위원장은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사의뢰, 징계개시신청, 불문종결 등의 처리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다음, 관련 기록은 일정기간 보존·관리한다.

이상에서 법조윤리협회의 수임사건처리절차를 개관해보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법조윤리협회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큰 그림은 그려진 상태이지만, 세밀한 업무처리 매뉴얼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아래의 내용은 법조윤리협회의 운영 매뉴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자가 마련한 안을 요약한 것이다. 문제되는 절차를 처리단계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Ⅲ. 접 수

1. 대상 사건

1.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법관, 검사, 장기복무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를 개업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자료⁷⁾를 법이

정한 제출기한 내⁸⁾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변호사법 제 89조의4 제1항). 위의 자료를 제출받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 변호사의 자료제출 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1.2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⁹⁾을 수임한 변호사(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연 2회 정해진 기간 내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다(변호사법제89조의5 제1항).¹⁰⁾

2. 사건의 접수

심사·분석 대상 사건을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아 윤리협의회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이다. 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하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처리결과 및 특정변호사의 성명·사건목록 등 수임

7)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 제2항). ① 공직퇴임일 ② 퇴직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③ 수임일자 ④ 위임인 ⑤ 위임인의 연락처 ⑥ 상대방 ⑦ 사건번호 ⑧ 사건명 ⑨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⑩ 수임사무의 요지 ⑪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8) 공직퇴임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할 시한은 매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이다(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 제1항).

9) ①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 포함)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회원의 형사사건 평균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2 제2항 제1호), ② 형사사건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 사건 평균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같은 항 제2호), ③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같은 항 제3호)

10) 제출시한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2 제1항 참조.

자료에 대한 서면접수만이 가능하며, 의뢰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의 구두접수나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한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조윤리협회의 실무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¹¹⁾ 법조윤리협회의 접수업무는 기관출범이 일천하여서인지 이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정한 원칙하에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업무의 효율이 저하되고 나아가 대외적 신뢰저하가 우려된다. 접수업무의 체계화가 시급하다.

2.1 접수 방법

사무국 담당직원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하는 변호사별 수임자료 등을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¹²⁾

2.2 사건번호 부여

접수대상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는 서기연수의 10단위 이하의 아라비아숫자, 사건별 부호문자(‘공직’, ‘특정’ 등)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진행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연도와 함께 시작한다.¹³⁾

사건별 부호문자는 i) ‘공직’(공직퇴임변호사사건), ‘특정’(특정번호

11) 필자는 2007. 7.부터 2008. 8.까지 초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을 역임한 바가 있어서 제임 중 법조윤리협회의 실무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12) 사건접수처리부 서식은 사건 접수-기초심사결과(정밀심사·분석대상선정여부)-정밀 심사·분석결과 처리내용(‘수사의뢰’, ‘징계개시신청’, 또는 ‘불문종결’ 또는 ‘정밀심사종결’)-수사의뢰·징계개시신청결과 회신내용 등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여 그 상황들을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할 것이다.

13)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매뉴얼(2006), 35쪽 이하 참조.

사 사건), ‘공특’(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 구분 표시하는 방법과, ii) 이들을 구분함이 없이 통합하여 ‘윤리’(윤리협회의 취급사건이라는 의미)라는 부호문자를 사용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무상 전문위원의 핵심업무인 ‘공직’사건이나 ‘특정’사건을 정밀 심사·분석하여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 절차나 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이들을 구분함이 없이 통합하여 ‘윤리’(윤리협회의 취급사건이라는 의미)라는 단일 부호문자를 사용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건번호부여 방식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예) 10 윤리 111 → 2010년 윤리협회의 심사대상 111번째 접수

그러나 공직퇴임변호사사건과 특정변호사사건은 변호사법에서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그 목적·선정기준·처리절차 등이 상이하다. 현재 실무상 양자에 대한 업무처리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향후 양자의 업무처리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이한 유형의 사건은 사건분류를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사건번호부여에 있어서는 ‘공직’(공직퇴임변호사사건), ‘특정’(특정변호사사건), ‘공특’(공직퇴임변호사사건과 특정변호사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 사건번호부여 방식은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예)

08 공직 99 → 2008년 공직퇴임변호사사건 99번째 접수

09 특정 108 → 2009년 특정변호사사건 108번째 접수

10 공특 11 → 2010년 공직·특정중복 11번째 접수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은 동일기간 내 일시에 접수된 심사·분석 대상 사건의 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호사가 6개월간 수임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각각 다른 독립된 사건에 관한 복수의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1인에 대한 자료는 1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임자료 개수마다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것인가이다.

생각건대 신고대상 수임사건 자체가 곧 수사의뢰 또는 징계개시신청 대상이 되는 비위 내지 관련법령위반의 표지가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거의 대부분은 심사결과 비위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변호사의 수임사건 중 복수의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수개의 수임자료를 병합하여 심사할 수도 있으므로(수임자료 검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규정 제5조),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기간에 접수된 대상변호사 1명에 대한 복수의 수임자료 전부를 1건의 사건으로 통합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건번호 부여에 있어서나 기록 관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접수된 대상변호사 1명에 대한 수임자료 전부를 1개의 사건으로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

IV. 기초심사

이 단계에서는 간사회의가 사무국을 지휘하여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접수한 사건의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전원위원회의 의결로써 정밀심사·분석대상사건을 선정하고, 전원위원회는 수임자료 검토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대상사건을 정밀 심사·분석 후 보고하도록 정밀심사·분석절차에 회부한다. 정밀심사·분석대상 선정에서 제외된 사건은 기초심사에서 다음단계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현 단계에서 종결하겠다는 결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사무국 담당직원이

사건접수처리부에 ‘불문종결’(또는 ‘기초심사종결’)¹⁴⁾이라고 기재하여 종결 처리한다.

1. 기초자료의 수집

법조윤리협회의는 변호사법상의 사건 수임에 관한 제규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사건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또한 법조윤리협회의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거하여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위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한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이나 처리결과를 통지받는다(변호사 법제89조의6 제1항, 제2항).

2. 정밀심사·분석 대상사건의 선정

자료 제출 의무자인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는 해마다

14) ‘불문종결’이라는 용어는 변호사 징계절차에서 징계협회가 없는 경우, 또는 징계협회는 있으나 그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를 하지 않는 처분의 주문이다. 수사절차에서의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모두 포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협회의의 심사·분석 사건에서도 ‘수사의뢰’ 또는 ‘징계개시신청’을 하지 않는 기타의 모든 처분에 대하여는 그 성질과 절차가 유사한 위 변호사 징계절차의 ‘불문종결’ 주문형식을 도입하여 종결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가지 대안으로서는 ‘불문종결’이라는 용어의 도입 없이 협의회 심사절차 중 기초심사단계에서 정밀 심사·분석 대상제외로 종결되는 사건은 ‘기초심사종결’라고 하고, 정밀 심사·분석 후 수사의뢰나 징계개시신청을 하지 않고 종결처리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정밀심사종결’이라고 구분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급증하는 추세인데 반해 이들이 제출한 수임자료를 심사·분석할 전문위원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므로¹⁵⁾ 접수된 모든 사건을 정해진 시한 내에¹⁶⁾ 빠짐없이 심층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모든 사건을 심층분석 하는 경우에도 그 대부분은 징계나 사법처리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불문종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집중적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접수된 대상사건을 제1단계 심사에서 일응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정밀 심사·분석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들 사건의 비위사실존부에 관한 사실 확인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밀 심사·분석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1단계 심사절차를 기초심사라 할 수 있다.

정밀심사·분석 대상사건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대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 마약사건·뇌물사건 등 특정 유사 사건의 집중여부, 변호사에 대한 세평, 지방변호사회의 의견, 전문위원의 사건 부담량 등을 종합하여 비위행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거나 특별히 집중분석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¹⁷⁾

기초심사절차는, 법조윤리협회의 전원위원회가 간사회회의와 사무국이 수집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공직퇴임·특정변호사 사건을 심사한 후 위 선정기준을 참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밀심사·분석대상 사건을 선정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5).¹⁸⁾

15) 법조윤리협회의 출범 후 수임자료 제출의무자인 공직퇴임 및 특정변호사 수는 2007년 하반기 464명, 2008년 상반기 696명, 2008년 하반기 792명, 2009년 상반기 910명인데 비하여 담당 전문위원 수는 2011. 12. 31. 현재 60명에 불과하다(자료출처: 법조윤리협회의 내부자료).

16) 변호사에 대한 수임자료는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제출받으므로 해당기간에 접수받은 사건은 다음 기의 자료가 접수되기 전에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7) 1인당 조사대상인원은 2명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다(정희찬, “조사절차에 관한 의견”, 법조윤리협회의 전문위원간담회 자료, 2008. 7. 17. 참조).

18) 2007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의 정밀 심사·분석대상변호사(사건) 선정 현황을 보면, 2007년 하반기 27명(건), 2008년 상반기 44명(건), 2008년 하반기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심사대상사건 중 대상 변호사가 의무적 기재사항의 기재를 회피·누락하거나 사실관계나 의뢰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부실하게 기재하여 심사·분석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이다. 생각건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재사항을 백지로 두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기재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부작위)행위이고, 이러한 부작위는 외형상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변호사에게 1차 보완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시 법령위반으로 징계개시신청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 기재사항 회피·누락이 아니나, 의뢰인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는 등 그 기재 내용이 부실한 경우는¹⁹⁾ 기초심사과정에서 그 부실기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초심사절차에서 이러한 사유를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단 다른 사유로 정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에서 부실기재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고의성여부를 따져 응분의 제재수단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²⁰⁾

60명(진), 2009년 상반기 61명(진)이다(자료출처: 법조윤리협의회 내부자료)

- 19) 실제 정밀심사분석 대상 사건 중 사실 확인 대상 의뢰인들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보완요구에도 변호사가 성의 있게 응하지 아니하여 대상 의뢰인의 과반수이상에 대하여 아예 전화조사도 실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이 지적되고 있다(박경호, “정밀조사대상사건 조사실무상의 개선점에 관하여”, 법조윤리협의회전문위원 간담회 자료(2009. 11. 30)).
- 20) 대상 변호사의 자료제출거부나 허위자료제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실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① 2010. 9.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차례 자료제출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7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게 과태료 부과신청을 함과 동시에 변호사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례, ②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입자료 및 처리결과 난에 수입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자료출처: 법조윤리협의회 내부자료).

V. 정밀심사 · 분석

기초심사절차에서 정밀 심사 · 분석대상으로 선정 사건을 소속 전문 위원에게 배당하고, 전문위원들은 해당사건을 정밀 심사 · 분석한 후 대상 변호사에 대하여 수사의뢰, 징계개시신청, 불문종결 (또는 ‘정밀심사 종결’) 등의 의견으로 법조윤리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이다.

1. 사건의 배당

법조윤리협의회에 설치된 수임자료 검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원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밀심사 · 분석대상사건에 대하여 각 주임전문위원을 지명하고(수임자료 검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해당 사건 기록을 각 주임전문위원에게 배부한다. 이 절차가 사건의 배당이다.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서 수임자료 검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규정 제4조의 제척 · 회피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및 지연 · 학연 · 친분관계 등 전문위원과 대상 변호사와의 특별관계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전문위원에게 그 사건의 배당을 배제해야 하며, 업무의 신속 ·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가급적 전문위원 1인당 대상변호사 2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밀 심사 · 분석 업무

2.1 심사 · 분석 업무의 법적 성격

법조윤리협의회는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고(변호사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법조윤리협회의에 출석하여 진
 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법조윤리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제2호 전단),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같은 법 제89조의5 제2항 전문). 법조윤리협회의 위원장은
 변호사, 사무원, 의뢰인 및 진정인 등 관계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전문위원이 직접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법조윤리
 협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수임자료 검토에 관한 특별위원
 회 규정 제7조). 법조윤리협회의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전문위원은 공직
 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를 검토하고, 관계법령위반 및 징
 계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사하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법조윤리협회의는 변호
 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법조
 윤리협의 협회의의 사실 확인 절차에서의 업무내용은 ‘분석’(변호사법
 제89조 제1항 전단), ‘확인’(같은 법 제89조의5 제2항), ‘검토’(수임자료
 검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 ‘심사’(같은 규정 제6조,
 제7조) 등의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사실
 확인을 위한 법조윤리협회의의 업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기에서는 ‘심
 사·분석’이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심사·분석 업무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이는 법조윤리에 관한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 확인 절차’라는 점에서 ‘조사’나 ‘수사’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심사·분석은 관계법령위반 사항 발견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

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의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범죄혐의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징계나 조정 등 비형사적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나 범죄를 밝혀 혐의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와 다르다. 또한 법조윤리협회의 심사·분석 결과에 의하여 수사의뢰한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검찰청에서는 실무상 이를 내사사건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²¹⁾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별도로 징계를 위한 ‘조사절차’가 진행된다.²²⁾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조윤리협회의 심사·분석은 ‘수사(내사)’나 ‘조사’에 이르기 전단계(前段階)로서의 사실 확인 절차로 성격 지워질 수밖에 없다.

2.2 사실확인 방법

2.2.1 유의사항

사건의 수임 및 처리과정에서 법조윤리위반이나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례가 있었는지 유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전제된다. 사실확인을 위한 기법(技法)으로서는 서면확인, 대면확인 내지 현장 확인, 전화확인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21) 예를 들면, 법조윤리협회가 2008. 8. 20.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이 같은 달 22. 2008내사 제400호 내사사건으로 접수하고, 내사활동 끝에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같은 해 12. 30. 내사종결처리 하였다.

22) 변호사법 제97조의4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징계개시의 청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나 대상변호사에 대하여 비위사실이나, 과거의 비위 전력 등에 대한 선입감이나 편견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사안의 진상파악을 그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절차를 담당할 전문위원으로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단이나 편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사실확인 업무를 위하여 전문위원은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표에 기재된 ‘수임사무의 요지’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대법원 사건 검색 창 등을 통하여 사건의 전모를 미리 파악한 후 사건의뢰인 등에 대한 사실확인에 임하는 것이 좋다. 확인대상 변호사의 사건 수임 경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i)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변호사라면, 우선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 및 재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사건소개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유념해볼 필요가 있고, ii) 마약류사건, 불법오락·도박 관련사건, 조직폭력사건, 해외이주민 관련 이혼사건, 국가를 상대로 한 국유재산환수소송 등 특정한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변호사라면 어떤 구조로 특정한 사건들이 대상 변호사에게 집중될 수 있는지, 브로커에 의한 사건소개료 수수비리가 개재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미리 수집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들을 통하여 사실확인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수임 경위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변호사에 대하여는 전회에 심사한 바 있는 전문위원을 통하여 해당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실제 발생하였던 징계사례나 관련판례 등을 통하여 사건의 유형, 발생빈도, 사건의 추이나 경향 등을 파악하여 숙지하면 사실확인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2.2.2 서면확인

확인대상변호사의 사건 의뢰인에게 일괄적으로 서면 설문확인서를

발송하여 그로부터 답신을 받는 방법이다. 전화질의나 대면확인(前)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업무의 간편성은 인정되나, 신속한 업무처리필요상 많은 업무량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회신율이 저조하여 그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확인 방식은 수임사건의 사실확인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서는 적절치 아니하고, 뒤에 나오는 대면확인이나 전화확인절차를 먼저 거친 후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일부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³⁾

2.2.3 대면확인 또는 현장확인

대면확인이란 확인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대상자로부터 직접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전문위원이 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대면하거나 윤리협의회 사무실 등에 출석요청을 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확인을 하고 아울러 상대방을 대면하여 사실확인 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²⁴⁾

전문위원이 대면확인을 할 경우나 확인대상 장소로 출장하여 사실확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윤리협의회 위원장 명의의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자임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장확인 장소가 대상변호사가 지배하는 사적 공간일 경우에는 현장확인 예정사실을 대상 변호사

23) 서면확인 시에는 설문은 5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설문사항이 5개 이상 될 때에는 귀찮게 생각하고 응답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 회신율의 제고를 위하여 우표를 붙일 필요가 없는 회신봉투를 동봉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회신봉투 겉면에 발신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4) 실제로 2010년 사건 정밀 분석 활동 중 윤리협의회 전문위원이 직원 2명을 대동하고 포항지역의 대상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휴대한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녹음기로 관계자의 진술을 녹취한 다음, 그 결과물을 전문위원사건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

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상변호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상대변호사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의 현장방문 사실확인 활동은 일종의 강제수사 유사행위로서 적법절차정신에 어긋난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전문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부재 등으로 절차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여 사실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장방문 사실확인 활동 시에는 윤리협의회 소속 직원을 참여토록하고 카메라, 녹음기 등 채증장비도 휴대하되, 현장을 촬영하거나 사람의 진술을 녹취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뢰인 등 제3자를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채증하고 대면확인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현장방문 사실확인 절차에 준하여 의뢰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내실 있는 사실확인을 위한 방법으로서 대면확인 내지 현장확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나, 전문위원의 업무가중, 상대방의 비협조 등으로 현실적 시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사권이나 강제출석요구권 등의 수단을 갖지 못한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대면확인이나 현장확인을 주된 사실확인 방법으로 채택하기는 부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i)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개연성이 있는 대상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거나, 동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종합적인 사실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²⁵⁾ ii) 전화확인 결과 의뢰인 등이 특히 협조적이고,

25) 전문위원이 수입사건 정밀분석 후 수사의뢰의견이나 징계개시신청의견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사건에 있어서는 의견서 작성 전에 대상변호사를 상대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적 적정성의 면에서나 진실확인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신분을 공유하는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얽힌 대상변호사를 직접 대면하여 사실확인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고, 대면확인 절차의 이행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변호사에게 법조윤리위반이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뢰인 등이 면담확인절차에도 기꺼이 응할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현장방문 사실확인 방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2.2.4 전화확인

대상자에게 전문위원이 전화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이다. i)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도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ii) 상대방의 협조도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i) 자신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먼저 알고 전화를 걸어야 하는 데 대하여 불쾌감과 경계심을 드러내며 진술을 거부할 경우가 많고,²⁶⁾ ii) 사건수임 변호사에게 법조윤리위반 내지 관련법규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화확인 방법의 의하여 얻어진 자료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전화청취결과보고서 밖에 없어 징계개시청구 시나 수사의뢰 시 증거자료로서의 적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이러한 상황에 접할 경우 대면확인 대신에 법조윤리협의회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내어 서면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6) 이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산하기관으로 회원인 변호사로부터 수임에 관한 자료를 송부 받아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며 원치 않을 경우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의 오해가 쉽게 해소될 것이라는 사건처리 경험 있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다(장정애, 2008. 7. 17.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간담회, “조사 매뉴얼 제작관련” 기재 참조). 그러나 윤리협의회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류의 허위통신이 아니라는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수월하게 인식시킬 수 있겠으나, 윤리협의회 지위나 성격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윤리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산하기관이라기 보다는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공동으로 운영재원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독립된 공적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명도가 낮은 윤리협의회 지위나 성격을 정확히 알려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처음에는 다소 힘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윤리협의회 출범을 위상 제고와 업무의 홍보에 순기능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다.

통화 상대방이 진술을 반복하고 통화내용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분석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전화를 통한 확인방법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⁷⁾ 전화를 통하여 가령 가까운 친지의 소개로 아무런 대가를 수수함이 없이 변호사를 추천받았다거나, 변호사의 인품이나 업무처리능력이 탁월하다는 소문을 듣고 의뢰인이 직접 변호사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쉽게 ‘불문 종결’ 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전화확인 중 문제점이 발견된 사건은 6하 원칙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통화가 종결된 후 ‘전화통화결과보고서’에 6하 원칙에 의하여 그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가급적 추가로 통화자·기타관계인에 대한 대면확인, 서면확인 기타 방법으로 문제된 사실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자료를 충실히 수집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수집된 자료는 징계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의견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시 관련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3. 결과보고

전문위원이 대상변호사별로 정밀사건 심사·분석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별위원장을 경유하여 법조윤리협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소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검토보고서에 기초하여 사건처리에 관한 의견을 보고한다.

27) 전화확인 시 기밀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가정전화나 회사전화가 아닌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연결하되 바쁜 아침시간이나 낮 시간 보다는 저녁 식사 직후의 시간 대 등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시간대에 전화를 함으로써 내용을 좀 더 소상히 들을 수 있다 한다. 최 원, “법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의견”, 법조윤리협회의 전문위원 간담회자료(2009. 11. 30).

검토보고서에는 정밀심사·분석에 대한 개관과 결론부분으로서 전문위원의 사건 처리 의견을 기재한다. 전문위원의 사건처리 의견의 개진은 주문사항으로서 ‘징계개시신청’, ‘수사의뢰’, ‘불문종결’ 등의 의견을 기재한 후 각각 그 이유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Ⅵ. 사건의 결정

1. 소위원회 심의

법조윤리협의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법조윤리협의회규칙 제13조 제1항), 현재 3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각 소관 소위원회에서는 소관 정밀심사·분석사건에 대하여 담당전문위원으로부터 사건의 심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받고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소위원회는 소관 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담당 전문위원의 징계개시신청의견, 수사의뢰의견, 또는 불문종결의견 등의 처리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그 적정성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징계개시신청의견 사건이나 수사의뢰의견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특정가능여부,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입증자료의 유무, 적용법조의 타당성여부,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여 전문위원 보고의견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 전문위원의 의견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개시신청의견 사건인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불문종결의견으로, 수사의뢰 의견 사건인 경우에는 징계개시신청 또는 불문종결의견으로 각 변경할 수 있고, 그 심의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전문위원이 불문종결의견으로 보고한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① 징계개시신청이나 수사의뢰 대상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어 혐의가

없는 때와, ② 비위 내지 범법사실은 입증될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때로 나누어 심의하되 후자(②항)의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달리 징계개시신청의견이나 수사의뢰 의견으로 변경할 수 있고, 그 심의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2. 전원위원회 의결

법조윤리협회의 위원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밀심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징계개시 신청, 수사의뢰, 불문종결 등으로 사건처리에 관하여 최종 의결한다.

전원위원회가 사건처리에 관하여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3개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작하되, 소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됨이 없이 독자적 기준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위원상호 간에 사건처리에 관한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개시신청, 수사의뢰, 또는 불문종결 등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변호사법시행령 제20조의5).

3. 징계개시신청

법조윤리협회의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징계개시신청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은 법조윤리협회의 위원장 명의의 징계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송부한다.

징계개시신청서를 작성함에는 피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소속회, 피신청인의 전화번호, 사무실주소 등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한다. 또한 징계개시 신청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징계개시신청 혐의사실, 징계개시신청 사유, 특이사항 및 징계개시신청 경위, 신청의 전제사실 등을 기재한다. 특히 징계개

시신청 혐의사실은 가급적 6하의 원칙에 따라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적용법조 난에는 변호사법 등 징계개시신청 혐의 사실에 적용될 해당법령 명과 적용 법조를 기재하고, 징계개시신청 혐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나 징계절차 진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한다.

4. 수사의뢰

법조윤리협의회 전원위원회가 수사의뢰대상으로 결정한 사건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명의의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한다.

수사의뢰대상 변호사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소속회, 전화번호, 사무실주소 등 대상변호사를 특정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한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의뢰 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쉽게 파악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사의뢰 범죄혐의사실, 수사의뢰 사유, 특이사항 및 수사의뢰경위, 수사의뢰의 전제사실 등을 기재한다. 적용법조난에는 변호사법 등 수사의뢰 범죄사실에 적용될 법률의 명과 적용법조를 기재한다. 범죄혐의사실을 입증할 자료나 수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은 전항 징계개시신청의 경우와 같다.

5. 불문종결처리

5.1 내부적 처리절차

전원위원회의 불문종결 의결이 있는 경우 사건접수처리부의 해당 난에 정밀심사결과 불문종결 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대상변호사에 대한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불문종결의결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기록을 보존한다.

5.2 처리결과와 통지

대상 변호사와 그 의뢰인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상 변호사에 대한 법조윤리협회의 비위사실여부에 관한 사실확인 업무는 일반적으로 그 사건의 의뢰인을 상대로 사건의 위임경위 및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질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의뢰인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질의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상 변호사는 그에 대한 주변의 평판이나 신뢰, 명예감이 상당한 정도로 손상될 수 있다. 법조윤리협회의 사실확인 과정을 거친 후 비위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불문종결로 처리된 경우에는 대상 변호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줌으로써 해당 변호사가 입은 각종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²⁸⁾ 그러므로 불문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변호사에게 그 결과를 통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상변호사가 아닌 단순한 사건 의뢰인에게도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건으로는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정하여 질의한 단순한 사건 의뢰인은 일종의 참고인신분에 불과하고 해당사건의 처리결과가 이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당한 관심의 대상도 아니므로 단순한 의뢰인에게까지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수사실무상 피의사건을 불기소처리 할 경우 고소·고발사건뿐만 아니라 인지사건에 있어서도 ‘피의사건처분결과서’를 일괄 출력하여 피의자에게 송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고,²⁹⁾ 사건 관계인들 중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진정인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28) 박경호, 앞의 논문 참조.

29) 법무연수원, 검찰실무1(2010), 493쪽.

요청하고 처리결과에 관심을 갖는 이해관계인들에 한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다.³⁰⁾

통지의 방법으로서 대상 변호사에게 대상사건은 특별한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불문종결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법조윤리협의회장 명의의 봉합우편을 송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지서 양식에 따라 간편하게 작성하는 것이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II. 사건기록의 보존

사건기록의 보존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업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징계개시신청 접수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나 수사의뢰사건 접수기관인 관할 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조윤리협의회가 접수하여 종결 처리한 사건의 기록은 이를 처리유형별로 분류하여 일정기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은 건별로 보존하되,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존기간의 기산에 관하여 본다면,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4조 참조).

1. 징계개시 신청한 사건기록의 보존

징계개시신청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종료된 후³¹⁾,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각종

30) 그 이유는 고소·고발인 등의 항고, 재정신청권, 고소·고발권 등의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법무연수원, 앞의 책, 494쪽 참조.

31) 법조윤리협의회장의 징계개시신청이 있을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의 장은 지체 없이

서류를 본 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기록의 보존기간은 징계시효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변호사징계규칙 제16조 제4항), 기록의 보존기간은 징계절차가 종료되어 완결된 다음해의 1월1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한다.³²⁾

2. 수사의뢰한 사건기록의 보존

수사의뢰 후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내사종결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의 내사기록보존기간에 상응하여 원칙적으로 수사의뢰한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까지 기록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³³⁾ 수사의뢰한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법조윤리협회로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이므로 ‘형 확정 후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라는 검찰청의 기록

징계개시의 청구를 할 것인지,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변호사법제 97조의4 제1항), 그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원칙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는 변협회장의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같은 법 제98조 제1항),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32)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고(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불기소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 기록은 3년간 이를 보존한다.), 내사사건의 경우 불기소사건의 보존기간에 준하여, 진정사건의 경우 3년간 각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규칙 제16조).

33) 법조윤리협회회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경우 그 처리절차를 보면, 해당검찰청에서는 일단 접수된 사건을 내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내사를 진행하고,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피의사건으로 범죄입건처리를 거쳐 입건 후 기소하게 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때에는 내사종결처리를 하고, 어떤 주문으로든 검찰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조윤리협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될 것이다.

보존 연한을 따를 필요는 없고,³⁴⁾ 형사재판절차가 종료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까지 이를 보존하면 족하다고 본다.

3. 불문종결 처리한 사건기록의 보존

불문종결의 형식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도 판결 등 재판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추후에 해당사건에 대한 비위사실이나 범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징계개시신청이나 수사의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문종결사건도 일정기간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 보존기간은, 수사의뢰나 징계개시 신청된 사건과는 구분해야 할 것이므로, 수사사건의 진정사건 기록에 준하여 사건을 불문종결 처분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3년간 보존토록 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경우 관련사건기록은 합철하여 보존한다.

VIII. 결 론

이상과 같이 업무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사건 분석절차 및 그 방법, 즉 법조운영협의회의 운영 매뉴얼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주요한 내용을 요약·추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건의 접수에 있어서는,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가 수임한 모든 사건에 통일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분류하고, 각 사건을 사건접수처리부에 등재하여 사건을 접수 처리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34) 이에 대한 재판 기록은 검찰청에서 소정의 기간까지 보존할 것이므로 중복보존의 필요성이 없다.

없는 한 특정번호사에 관한 자료는 모두 병합하여 1개의 사건으로 본다.

둘째, 정밀심사·분석대상사건 선정을 위한 기초심사절차에 있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대로 신속하게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법조윤리협회의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정밀심사·분석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된 사건은 이 단계에서 ‘불문종결’ 또는 ‘기초심사종결’이라는 주문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사건접수처리부에 등재한다.

셋째, 사건의 정밀심사·분석절차에 있어서는, 사건의 배당, 전문위원에 의한 정밀심사·분석방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넷째,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여 법조윤리위원회 소위원회에 의한 심의, 동 전원위원회에 의한 의결, 그 후속 업무로서 징계개시신청서 및 수사의뢰서 작성방법, 불문종결처리 요령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 등에 있어서는, 법조윤리협회의 사건종결 후 관련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징계개시신청사건, 수사의뢰사건, 불문종결사건 별로 보존기간의 기산점과 보존기간을 달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출범 4년을 갓 넘긴 법조윤리협회의 수임사건분석업무의 절차적 체계화, 업무의 효율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수임사건의 처리절차와 방법에 관한 체계화·매뉴얼화는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라는 3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재원을 출연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공적기관인 법조윤리협회의 체제존속에 관한 정당성 내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위에서 본 운영절차들이 그대로 법조윤리협회의 업무 매뉴얼로 반영되어 잘 운영된다면 열악한 인적자원, 부족한 물적 지원의 어려움

속에서도 법조부조리를 억제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관예우나 브로커 고용 등에 바탕을 둔 사건 수임 비리를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의 가동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우선,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를 개업한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건수의 다소에 상관없이 수임한 사건자료를 연 2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한편, 형사사건 또는 민사 본안사건 등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다수 수임한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소속지방변호사회가 그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아닌 사건과다수임 변호사는 전관예우 보다는 브로커 고용 등 사건수임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 분석대상이 된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접수된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에 대하여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기초심사를 하고, 그 중 문제가 엿보이는 사건과 해당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정밀 심층 심사·분석대상으로 분류하게 된다. 정밀 심사·분석대상으로 분류된 사건 및 해당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60여 명의 전문위원들이³⁵⁾ 사건

35) 변호사의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전문위원직을 전원 변호사자격자로 구성하는 점에 대하여 그 적절성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변호사 상호간은 사법연수원이라는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선후배관계이고 기타 지연·학연 등으로 얽혀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대상변호사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감싸고 비호하는 데에 열중한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조비리퇴치에 대한 사명감이 높고 공익 직무충실 의지가 강한 현직의 변호사 또는 비교적 현실 법조실무에서 자유로워 공정한 업무처리가 기대되는 로스쿨 내지 법과대학 교수들 중에서 이를 추천받아 위촉하고, 이들에게 정밀분석대상사건을 배당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담당 전문위원과 대상 변호사 간에 동향 선후배 등의 관계가 있어 객관적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사건의 배당을 배제하는 방법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을 배당받아 집중적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법조윤리위반 여부를 분석·판단한다. 즉, 담당 전문위원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관계인 등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건 수임경위, 접대비 명목의 부당한 금품요구 여부,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서면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강도 높은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심사 후 비위행위 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 징계개시신청 등의 제재조치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실적 제출의무 부과, 전문위원에 의한 정밀심사, 법조윤리협회의 각종 제재조치 등 변호사의 사건 수임관련 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시스템 가동은 공직퇴임변호사나 일반 변호사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³⁶⁾ 그 결과 법조관련 비리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⁷⁾ 이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평가도 일부 감지된다.³⁸⁾

법조윤리협의회에 접수된 사건들이 한 건도 소홀함이 없이 법규와

36) 실제로 사실확인 작업에 투입되었던 상당수 전문위원이나 법조윤리협회 담당자의 전언에 따르면 대상변호사들이 해당전문위원이나 법조윤리협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사실확인 활동에 격렬히 항의하거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37) 김영철, “법조윤리협회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토지공법연구 제54집(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280쪽.

38) 조선일보 2011. 2. 17자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매체가 같은 날짜에 “법조윤리협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검찰이 판사 접대나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판·검사 출신 변호사 5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법조윤리협회는 정부의 사법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2007년 설립된 단체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연간 3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수임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다. 지난해의 경우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변호사 960명을 조사해 상반기 2명, 하반기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법조윤리협회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역할을 기대하는 시각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에 의하여 제대로 처리되고, 사후관리도 흠결 없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때에 그 존속의 당위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업무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바탕위에서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어지면 국민의 신뢰도 그만큼 상승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1년 12월 31일, 심사(의뢰)일 2012년 1월 31일, 게재확정일 2012년 2월 8일)

주제어 :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수입사건 분석, 징계개시신청, 수사의뢰

참고문헌

1. 단행본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집, 2009.

_____, 변호사법촉조해설, 2009.

박휴상, 법조윤리, fides 도서출판, 2010.

법무연수원, 검찰실무 I, 2010.

사법연수원, 사법제도론, 2006.

_____, 한국법조론, 2006.

_____, 수사절차론, 2010.

_____, 검찰실무 I · II, 2010.

_____, 검찰서류 작성례,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7.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이창희/장승화,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03.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박영사, 2010.

최진안, 법조윤리, 세창출판사, 2010.

한인섭 외, 법조윤리, 박영사, 2010.

2. 논문

김영철, “법조윤리협회의 운용현황과 발전방안”,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3.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메뉴얼, 2006.

법조윤리협의회, 집중검토보고서(2007년 하반기), 2008.

_____, 집중검토보고서(2008년 상반기2-1), 2009.

_____, 집중검토보고서(2008년 상반기2-2), 2009.

_____, 2008년 하반기 정밀심사검토보고서, 2009.

_____, 현황 및 전문위원 업무처리참고자료, 2009.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업무편람,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Operating Procedures

Young-Cheol Kim*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was established on July 27th, 2007 to foster legal ethics and a sound legal climate. The goals of this national organization are to establish regular monitoring and analysis of legal ethics as well as establishing measures designed to curtail the practice of granting special legal privileges to former government legal officials.

Though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he organization has neither prepared itself to handle the data related to thousands of cases submitted by each district attorney association, nor has it established procedures to analyze and determine whether the attorneys are guilty of corruption or ineffectiveness. It is therefore of dire importance that measures are established and procedures put into place.

Today legal proceedings emphasize not only investigations and disciplinary actions, but can also involve the infringement of rights in such a way that it can be disadvantageous to the party or parties directly involved. Therefore, the systemization of procedures is important not only to create an efficient means by which to process work, but also to increase reliability and improve public views.

The Legal Ethics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is classified as an official

* Professor of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organization tasked with managing resources and providing manpower in association with three different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In light of this the minimum requirement that must be met is the system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procedures and methodology for cases in order to provide reliability and ensure the Legal Ethics Professional Conduct Association's system is consistent.

The Legal Ethics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will only be able to continue to function as long as the cases it reviews are processed smoothly following the procedure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organization without disregard.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analytical procedures and methodology pertaining to cases tried by attorneys who retired from public prosecutors and judges, and to systemize and increase efficiency of Legal Ethics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works.

This paper will cover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procedures and issues such as receipt and enrollment of cases, primary screening, in depth investigations, analysis, and judgment as well as record keeping throughout the entire procedures. I look forward to having the opportunity to increase the nation's level of trust and being able to secure a just legal system through effective work and public trust in spite of the limited support, lack of funding, and being understaffed.

Key Words :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Attorney, Case Analysis, Disciplinary Action Application, Request for Investigation